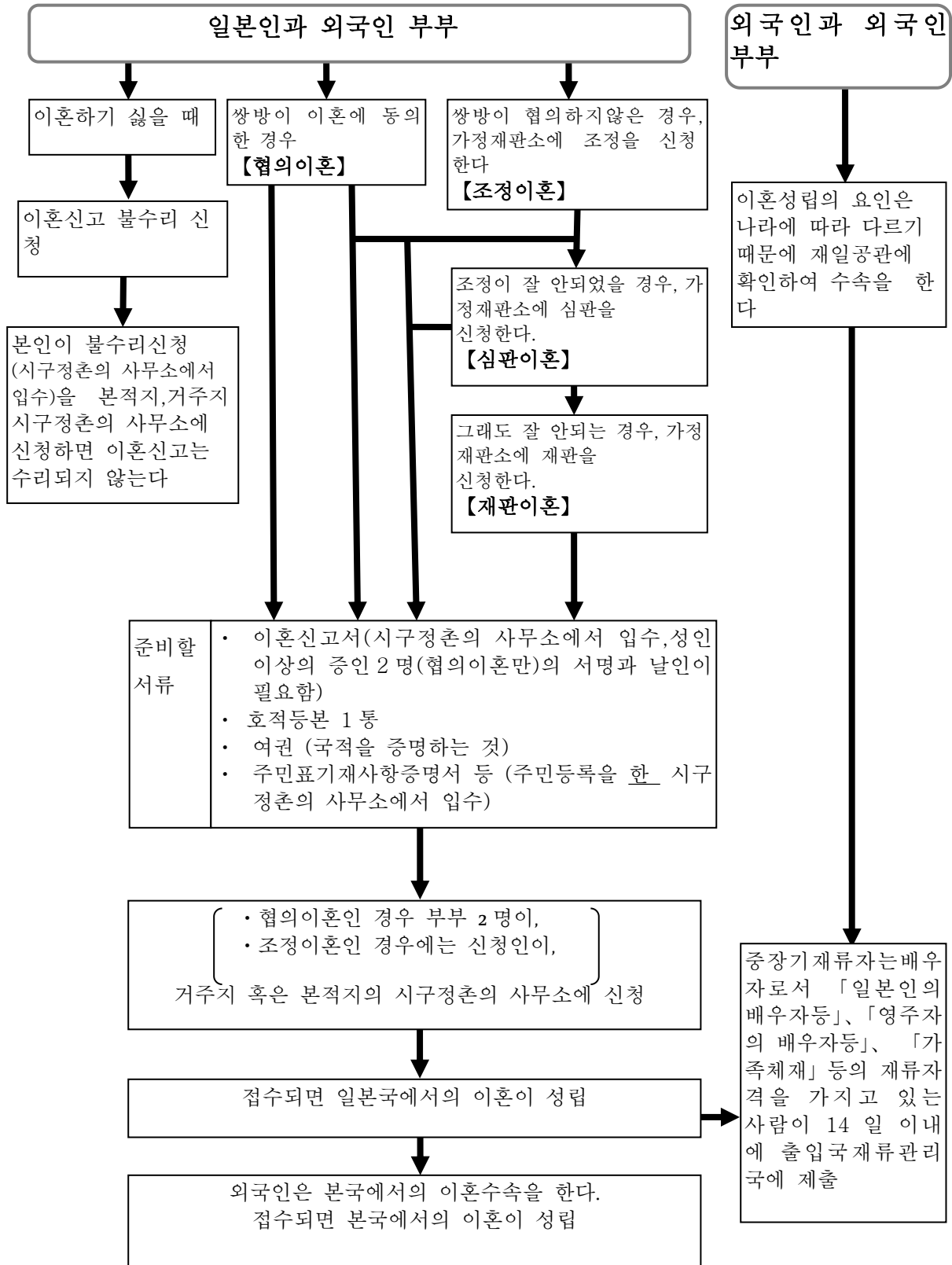


IV-4 이혼

국제결혼인 경우의 이혼수속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속하여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귀하의 본국에서는 이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하는 수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며 부부쌍방이 이혼할 것을 동의 하면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립됨으로써 성립되는 「협의이혼」, 가정재판소가 관여하여 성립되는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이혼수속을 하고 본국의 이혼수속을 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도 있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 이혼에 필요한 요건이나 수속이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 본국의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5)

2. 이혼하기 싫은 경우

당신이 일본인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서에 서명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혹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앞으로 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을 해놓으면 당신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이나 재판수속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 제도는 부부쌍방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혼 후의 재류자격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또 외국인배우자로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나 「가족체재」 등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혼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가족체재」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나,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본에 재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상담창구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부록Ⅸ-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등록사항의 변경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변경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구정촌사무소(부록Ⅸ-1)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